

의안번호	제 163 호
의 결 년 월 일	2007년 월 일 제 회
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
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 출 년 월 일	2007년 10월 24일
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의안
번호

163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24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에 21세기 국가과학기술중심 사회를 주도할 BT, NT 관련 기초과학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·발전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후 취득하여
- 제232회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'04.11.4 ~ '07.11.3 (3년간)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을 일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였고
-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의 대부료 면제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“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”에 대부료 면제후 계약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심의사항

- 위 치 :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4-1 외2필지
(오창과학산업단지 내)
- 면 적 : 224,254.2m²
- 용 도 : 연구시설 용지
- 신청인 :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- 기 간 : 17년간 대부료 면제('07. 11. 4 ~ 2024. 11. 3)

3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, 제29조, 제31조, 제3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제9조 제5호, 제29조 제1항 제24호, 제30조 제4호, 제35조 제1항 제4호

관계 법령

<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>

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구거(구거)·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29조 (계약의 방법)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, 증권의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,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

제31조 (대부기간)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4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생 략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

<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>

제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 ~ 4 생략

5. 제29조제1항제14호·제20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
6 ~ 9 생략

제29조 (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

1 ~ 23 생략

2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
제30조 (대부기간)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까지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0.27>

1 ~ 3 생략

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
제35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6.12.30>

1 ~ 3 생략

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